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원 26명(7급 5명, 8급 5명, 9급 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5명, 7급 12명, 8급 9명)하면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인력 2명(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훈 관련 법제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8. ~ 3.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독립·호국 및 민주화 관련 국내외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제24조제1항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한다.

별표 18 중 총계 “872”를 “8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72”를 “870”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39”를 “144”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68”을 “175”
로,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07”
을 “211”로, 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
는 전산서기보 “179”를 “16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12”를 “10”으로 한
다.

국가보훈부령 제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4조 중 “정원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보 1명) 중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4년 2월 28일까지, 정원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각각 존속한다”를 “정원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정책실) ① ~ ⑩ (생략)	제8조(보훈정책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기념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독립·호국 및 민주화 관련</u> <u>국내외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u>	<u><삭 제></u>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⑫ (생략)	⑫ (현행과 같음)
⑬ 현충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2. 독립·호국 및 민주화 관련</u> <u>국내외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u>
⑭ ~ ⑰ (생략)	⑭ ~ ⑰ (현행과 같음)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u>정원</u> 은 별표 6부터 별표 19까지와 같다.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u>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② (생 략) 국가보훈부령 제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별표 5의 <u>정원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보 1명) 중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4년 2월 28일까지, 정원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각각 존속한다.</u>	② (현행과 같음) 국가보훈부령 제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 ----- <u>정원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8]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72</u>	<u>870</u>	-2
일반직 계	<u>872</u>	<u>870</u>	-2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 주사 또는 전산주사	<u>139</u>	<u>144</u>	+5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	<u>168</u>	<u>175</u>	+7
·	·	·	
행정서기 · 사회복지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207</u>	<u>211</u>	+4
·	·	·	
·	·	·	
행정서기보 · 사회복지서기 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 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179</u>	<u>163</u>	-16
·	·	·	

• 사무운영서기보 •	• <u>12</u> •	• <u>10</u> •	-2
--	--	--	---------------------------------------